

# 진 정 서

진 정 인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8호  
                      대표 박영희 (담당자 : 김성연 )  
위 진정인의 대리인  
                      변호사 엄선희, 한상원, 정지민(연락담당)

피진정인           1. A 고등학교장  
                      2. B 고등학교장  
                      3. C 고등학교장  
                      4. 경기교육감  
                      5. 강원교육감  
                      6. 경북교육감  
                      7. 교육부 장관

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피진정인들의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사항을 진정하오니, 이를 면밀히 조사하시어 구제조치의 이행, 제도개선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진 정 취 지

1. A고등학교장·B고등학교장·C고등학교장에게,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생 입학전형을 개선할 것,
2. 경기교육감·강원교육감·경북교육감에게, 대안학교 입시에서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생 입학전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할 것,
3.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 전반의 입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진 정 이 유

### 1. 당사자들의 지위

#### 가. 진정인

진정인은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상담을 접수하고 함께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 나. 피진정인

### (1) 피진정인 1~3

피진정인 1~3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안학교규정’ 이라 합니다)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 대안학교(A고등학교, B고등학교, C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들)’ 라 합니다))의 장으로서,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고(대안학교 규정 제14조)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자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 (2) 피진정인 4~6

피진정인 4~6은 각 피진정학교가 소재하는 관할 구역의 교육감으로서, 시·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조<sup>1)</sup>에 따라 각 관할 구역에 있는 피진정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지방교육자치기관입니다.

### (3) 피진정인 7

피진정인 교육부 장관은 학교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으로(정부조직법 제28조)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며(동법 제19조 제5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 2. 진정배경 : 피진정학교의 입학전형

### 가. A고등학교의 입학전형<sup>2)</sup>

---

1)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 A학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신입학전형 안내.

피진정학교 A고등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요항’에 의하면 모집예정인 80명의 신입생은 일반전형(68명 이상, 모집 정원의 85% 이상)과 특별전형(12명 이내, 모집 정원의 15% 이내)을 통해 선발됩니다. 특별전형은 ‘저소득층 자녀’, ‘지체부자유자’, ‘사회공헌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 유형		정원	비율	1차 전형	2차 전형
일반전형		68명 이상	모집 정원의 8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전형</li> <li>▪ 모집 정원의 1.5배수 내외 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전형</li> <li>▪ 최종 모집 정원 선발</li> </ul>
특별전형	저소득층 자녀	12명 이내	모집 정원의 15% 이내		
	지체부자유자				
	사회공헌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특례입학		1명(정원 외)	모집 정원의 2% 이내		
국가유공자 자녀전형		2명(정원 외)	모집 정원의 3% 이내		

<2023학년도 A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요항 - 모집정원 및 전형방법>

그중 A고등학교는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있는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지체부자유자(본교에서 수학 가능한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 5, 6등급)’의 신체적 장애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체 부자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지체부자유자 (본교에서 수학 가능한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 5, 6등급)’의 신체적 장애인 대상)</li> </ul>
------------	--

<2023학년도 A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요항 - 지체부자유자 지원자격>

### 나. B고등학교의 입학전형<sup>3)</sup>

피진정학교 B고등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전형 요강’에 의하면 신입생은 일반전형으로 40명, 특별전형으로 정원 외 2명 이내가 선발됩니다. 특별전형의 경우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해당되는 특례입학대상자(외국인 또는 외국 학교 출신자), 국가유공자 자녀(보훈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만이 지원 가능하며, 장

3) B고등학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전형요강.

에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B고등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이 지원가능한 전형은 일반전형밖에 없는데, 일반전형 세부 전형 방법에서는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학생의 기초적인 이해력과 지성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가 일반적인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⑧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학생의 기초적인 이해력과 지성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가 일반적인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B고등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전형 요강 - 일반전형 세부 전형 방법>

#### 다. C고등학교의 입학전형<sup>4)</sup>

피진정학교 C고등학교 ‘2023학년도 입시 전형 요강’에 의하면 신입생 36명은 일반전형으로만 선발되고,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와 해외 귀국학생 등 특례입학 해당자는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됩니다. C고등학교도 장애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C고등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기숙사 생활 및 체험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라. 합격자 배제

-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기숙사 생활 및 체험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시는 입학허가 예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모집정원에 미달되더라도 본교생활에 부적합한 요소가 있을 때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2023학년도 C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 - 전형 방법>

### 3. 장애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관련 법령

4) C고등학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신입생 전형요강.

## 가. 헌법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헌법 제34조 제1항) 필수적인 전제이자 다른 기본권을 의미 있게 행사하기 위한 기초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 영역에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의미합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국민 누구나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취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제도와 설비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헌법재판소 2000. 4. 27 자 98헌가16 결정 등 참조)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

## (1) 장애인권리협약상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권리협약은 ‘비차별’ 과 ‘기회의 균등’ 을 일반원칙으로 규정하면서(제3조),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제4조).

###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일반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마. **기회의 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 제4조(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2조(정의)

“장애로 인한 차별” 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 (2)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는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면서(제8조 제1항), 특히 교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 지원이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교육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0조 제4항, 제88조 제1호).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모든 교육기관이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 등에 편리하도록 시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제20조 제5항).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 라. 교육기본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한 특수교육법은 제4조 제1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 하는 등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교육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은 동법 제4조 제1항을 위반(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

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8조). 다른 차별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제38조의2)에 비추어 볼 때, 입학과정에서의 교육 기회의 균등, 차별금지가 장애인의 교육의 자유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

**(1)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6조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여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차별행위’ 를 ① 직접차별, ② 간접차별, ③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로 나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5)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국가의 일반적 의무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3) 교육책임자의 의무 :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교육책임자(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sup>6)</sup>는 장애인이 입학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하여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는 장애인의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책임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5. 각종학교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4. 이 사건 피진정인들의 장애인 차별행위

##### 가. 피진정인 1~3(피진정학교의 장)의 장애인 차별행위

###### (1) A고등학교의 경우

A고등학교는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있는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지체부자유자(본교에서 수학 가능한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 5, 6등급)’의 ‘신체적’ 장애인”로 한정적으로 명시하여 ① 기존 1~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② 신체적 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정신적 장애인), ③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장애인을 특별전형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① 이는 중증장애인의 특별전형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본교에서 수학 가능한” 자를 “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 5, 6등급)’ 의 신체적 장애인” 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실상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일반전형에서도 중증장애인을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내포한 것입니다.

A고등학교는 특별전형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2019학년도 입시까지는 “본교에서 수학이 가능한 4급 이상(5, 6급 제외)의 신체적 장애인” 으로 명시하였으나, 2020학년도 입시부터 입시요강을 개정하여 현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0학년도 이후 A고등학교에 입학한 중증장애인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A고등학교가 입시요강을 개정된 취지가 중증장애인의 입학 배제에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A고등학교와 동일 재단 산하의 A중학교 입시요강은 장애인 응시자의 지원요건을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지체부자유자” 라고만 명시하여 중증장애학생에게도 특별전형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A고등학교의 현행 입시요강대로라면 A중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중증장애학생의 경우 A중학교 3학년 재학생 60명 중 8~90%가 진학하는 A고등학교에 다른 학생들과 달리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차별이 발생합니다.

② 정신적 장애인도 중증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특별전형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A고등학교가 규정한 “본교에서 수학 가능한” 자에 포함되지 못하여 사실상 일반전형에서도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A고등학교는 중증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시에서 제한·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제6조에 반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입니다.

③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 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제1항), “장애인” 을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장애인을 특별전형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7항에 따르면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A고등학교는 지체부자유자가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A고등학교가 특별전형 지원 대상자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입학 지원단계에서부터 지원자의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판별하여 입시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전형 지원시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장애인의 경우 입학 지원시 별도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2) B고등학교의 경우

B고등학교의 경우 신입생 전형 요강 중 세부 전형 방법에서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학생의 기초적인 이해력과 지성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가 일반적인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세부 전형 방법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기초적인 이해력과 지성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신적 장애의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상동행동, 의사소통 장애 등을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가 일반적인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 하여 정신적 장애인을 선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원자가 학교에서 신입생에게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서류전형 및 다차원면접전형을 통해 심사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입학전형 자체에서 정신적 장애

인에게 불리한 별도의 선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정신적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시에서 제한·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제6조에 반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입니다.

### (3) C고등학교의 경우

C고등학교는 전형방법에서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기숙사 생활 및 체험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성적이 비장애학생보다 더 우수하더라도 장애 학생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C고등학교 입시에서 합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시에서 제한·배제하고,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제6조에 반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나 장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나 장벽의 제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장)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제5항, 특수교육법 제2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 따라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기숙사 생활 및 체험활동이 어렵다면 이를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C고등학교는 그러한 노력 없이 입시에서 장애학생을 불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입학·수학의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장애



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관련법령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 (4) 교육기회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행위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제4항, 특수교육법 제4조 제1항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학교들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교육기회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제4항, 특수교육법 제4조 제1항에도 위반되며, 나아가 헌법 및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 나. 피진정인 4~6(교육감)의 의무 및 장애인 차별행위

피진정인 경기·강원·경북 교육감은 각 관할지역의 피진정학교에 대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초·중등교육법 제6조), 그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진정학교 입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 경기·강원·경북 교육감은 피진정학교 입시에서 더 이상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전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해당 지침이 잘 이행되는지 감독하여야 합니다.

#### 다. 피진정인 교육부 장관의 의무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따라서 피진정인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전반의 입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을 시행하고 있는 목적은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입니다. 특별전형은 일반전형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육에 있어 차별받아온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생과 학업성취 정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는 실제 상위 단계의 교육으로의 진학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sup>7)8)</sup>

장애학생이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특별전형에서 선발되는 장애학생의 수가 해당 학교에 입학하는 총 장애 학생 수와 거의 일치하는 일반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실시’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의 제공’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의 경우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해야 한다’ 는 취지의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제34조의8). 초·중등교육도 장기적으로 장애인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모집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결론

피진정학교들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함으로써 교육기회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피진정학교들과 같은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피진정학교들은 일률적인 입시교육을 지양하고 ‘성·인종·종

7) 이호섭·김정희,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운영실태 분석 -2013학년도 대학입학 지원율과 등록률을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제56권 제4호,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2013년 10월, 129-130쪽

8) 헌법 제11조의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을 의미한다. 즉,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차별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교·장애 여부를 떠나’ 다양성을 추구하고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B 교육을 추구하면서도,<sup>9)</sup> 입시에서 명백히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진정학교들의 장애인 차별행위는 대안학교의 취지와 목적, 설립이념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차별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정을 제기하오니,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근거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진정취지와 같은 권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진정학교를 비롯한 교육 전반의 입시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인권침해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권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4.

위 진정인의 대리인

변호사 엄선희

한상원

정지민

##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

9) A고등학교 홈페이지, 학교소개-  
B고등학교 홈페이지, 학교소개-  
C고등학교 홈페이지, 학교소개-